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재난관리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,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
- (2) 설치목적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
- (3) 설치년도 : 2005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수, 보강 등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
- 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재난예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말 현재액 ㉑	2010년도 조성계획			2010년도 말 현재액 ㉒ = ㉑ + ㉓	비 고
	수입 ㉔	지출 ㉕	증감 ㉖ = ㉔ - ㉕		
331,386	462,400	414,373	48,027	379,413	

- (2) 재원조성 :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/100
- (3) 지원기준 : 해당없음
- (4) 지원대상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, 정비를 요하는 사업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